

## 免 责 条 款

我们努力提供准确的条约信息并定期核查、更新，但仍难以保证数据库中的条约信息与条约正式文本完全一致。对于使用本数据库信息可能导致的损失或法律纠纷，我们不承担任何责任。感谢您的理解和支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압록강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의된 조중압록강국경다리 봉쇄건설구역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바입니다.

### 제 1 조 봉쇄건설구역의 설정

1. 봉쇄건설구역은 료지봉쇄건설구역과 다리를 중심으로 상하류 1 km범위안의 수역봉쇄건설구역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하나의 봉쇄건설구역을 이룬다.

2. 중국측은 다리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리건설지휘부를 내오며 필요에 따라 중국측 봉쇄건설구역을 설정한다.

3.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의 건설지점은 교각번호 K11+863.2\_K12+900.083 범위안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1037m, 부지면적은 약 18.87 만㎡이다.

울타리 바깥쪽은 가시철조망으로, 안쪽은 불투명한 색강판으로 설치하며 우발적인 사건에 대응할수 있는 특수통로 (대문) 를 내고 일상시에는 열지 않는다.

조선측 다리건설 및 관리인원들의 봉쇄건설구역출입을 위하여 인원전용통로를 설치하며 중국측은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의 울타리와 부지정리, 내부건설을 맡아하고 조선측은 구역안의 지상구조물과 지하관, 선로 등 시설들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맡아한다.

4. 중국측 건설단위는 봉쇄건설구역안의 생산 및 생활을 관리하기 위하여 봉쇄건설구역안에 필요한 감시카메라체계를 구성하여 화면감시관리를 진행한다.

## 제 2 조 봉쇄건설구역의 출입

1. 조중쌍방의 공동검사부문은 자기측 봉쇄건설구역안에 공동검사 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건설 및 관리인원들과 운수수단, 기계설비, 물자들은 조중봉쇄건설구역사이를 자유롭게 오갈수 있다.
2. 조선측의 다리건설 및 관리인원들은 쌍방이 합의한 통행증에 근거하여 인원전용통로로 봉쇄건설구역에 출입한다.
3.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의 특수통로 (대문) 는 쌍방이 합의하여 립시 개방한다.
4. 중국측으로부터 봉쇄건설구역에 출입하는 건설 및 관리인원들과 운수수단, 기계설비, 물자들은 봉쇄건설구역밖의 조선측 지역에 들어갈수 없다.

## 제 3 조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생산과 생활 및 물자설비들의 관리

1.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생활 및 생산활동은 중국측 다리건설지휘부가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한다.
2.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생산활동은 중국측 기술규범과 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다리건설기간 봉쇄건설구역안에서 다리건설작업을 24 시간 진행할수 있다.
3.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생산 및 생활에 필요한 물은 봉쇄건설구역안에 우물을 파서 리용하며 필요한 전기는 중국측으로부터 끌어오며 필요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의 통신까벨은 중국측에서 끌어오며 중국측 전신부문이 봉쇄건설구역안에 통신기지를 설치한다.
4. 봉쇄건설구역에서 인원들의 생활 및 해당한 과외활동은 다리건설지휘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5. 다리건설과정에 중국측이 폐기하거나 남은 설비와 물자, 운수수단은 반드시 중국으로 운반해간다.

## 제 4 조 기 타 사 항

1. 쌍방은 다리건설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봉쇄건설구역안에서 건설 및 관리인원들과 운수수단, 기계설비, 물자,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인원들도 무기와 탄약 등 금지품을 휴대하고 봉쇄건설구역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한다.

2. 봉쇄건설구역안에서 중국측 인원들의 내부치안 및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측 해당 부문이 처리하고 조선측 인원들의 내부치안 및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선측 해당 부문이 처리하며 조중쌍방인원들사이에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의 해당 부문이 공동으로 조사처리한다.

3. 중국측 다리건설인원들은 중국전신회사의 통신망을 리용한다. 통신수단의 수량과 성능, 규격은 중국측 다리건설지휘부가 확정하며 봉쇄건설구역안에서 내부유선전화를 리용한다. 중국측은 자료전송을 위한 국부망을 리용하며 조선측 망과 연결하지 않는다.

조선측은 중국측의 통신이 지장받지 않도록 편리와 담보를 제공한다.

4. 쌍방은 봉쇄건설구역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따로 합의한다.

5. 쌍방이 규정하지 못한 기타 사항들은 협상하여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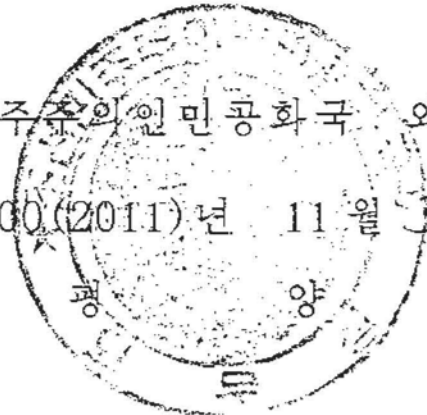
이 방법은 쌍방이 외교문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다리가 완공된 후 쌍방이 합의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측이 이상의 내용을 회답각서로 확인해주시면 이 각서와 중국측 회답각서는 조중쌍방사이의 합의로 될것이며 중국측이 회답각서를 보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다시한번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주체 100(2011)년 11월 30일



번호 16778